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122
----------	-------

발의연월일 : 2026. 9. 7.

발 의 자 : 김종양 · 김성원 · 서천호
박준태 · 이달희 · 박덕흠
배준영 · 이상휘 · 박형수
고동진 · 김태호 · 정동만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특정 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되, 하위 법령을 통해 기존 산업단지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하여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음.

따라서 신규 조성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이러한 예외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기존 산업단지와 신규 산업단지 간에 불합리한 규제 격차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신규 산업단지 내 기업에 대한 신규투자 등의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있음.

이에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거나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여 환경오염 우려를 해소한 경우에는 신규 산업단지이더라도 예외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규제 격차를 합리화하고 신규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3조).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물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단서 중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을 “배출시설을”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하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을 “예외적으로 배출시설을”로 한다.

1.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업단지에 설치하는 배출시설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9항에 따라 <u>폐수무방류배출시설</u> 을 설치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① ----- ----- ----- ----- ----- ----. ----- <u>배출시설</u> 을----- ----- -----.
② ~ ⑧ (생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⑨ 제7항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서 <u>폐수무방류배출시설</u> 로 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⑨ ----- ----- ----- ----- ----- ----- <u>다음 각</u> <u>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u> <u>에는</u> -----.
<u><신 설></u>	1. <u>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하여 설치하는 경우</u>
<u><신 설></u>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업단지에 설치하는 배출시설로서

⑩ 제9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서 <u>폐수무방류 배출시설</u>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및 시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⑪ (생략)	<u>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u> ⑩ ----- -----<u>예외적으로</u> <u>배출시설을</u>----- ----- -----. ⑪ (현행과 같음)
--	---